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26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 : 이종배·김상훈·윤영석

김형동 • 윤한홍 • 이종성

김희국 · 강대식 · 조수진

윤두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조합법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

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2조,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 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 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저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
1. 6. (한성의 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u> <u>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 2. <u>2022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u>2025</u>
년 12월 31일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u>12월 31일까지</u>
0.0007.1.401.401
2. 2027년 1월 1일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2025년</u>
12월 31일
<u>2</u>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② <u>2027년 1월 1일</u>